

정화조 청소 독촉 안내 및 과태료 부과예고

귀하께서 소유·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정화조(또는 오수처리시설)는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청소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과태료 부과대상이나, 과태료 부과 전 사전예고를 하오니 **2019. 7. 26.(금)까지** 반드시 정화조 청소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위 기한까지 정화조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에 의거 **100만원**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
□ 청소대상시설

소유자	소재지	시설규모(m ³)	이전청소일	청소하여야 할 기한	과태료 예정금액
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	금정구장전동 628번지 83호	2	2017-08-30	2018-08-30	100,000원

□ 정화조 청소 신청

청소업체	전화번호	관 할 지 역
항도정화	517-0666	장전동, 구서동, 남산동, 금성동
부산정화	517-0333	서동, 금사동, 부곡동, 청룡노포동, 선두구동, 회동동

- ▶ 요금안내 : 2019.7.1.이후 0.75m³까지 24,950원/ 0.75m³초과시 0.1m³당 1,850원
- ▶ 청소전.후 청소차량 뒤에 부착된 계량기 눈금으로 청소량 확인 후 청소요금 지불

※ 기타 문의사항이나 정화조 청소를 이행하지 못할 사유(공가,폐가 등)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금정구청 자원순환과(☎519-4441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